



작 성 요 령

1. 감독기관의 장이 승인한 자구계획은 처음 작성한 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구계획서를 처음 제출하는 때에만 이를 첨부합니다.
2. 사용계획명세 및 양도대상(수증)자산명세는 별지로 작성하고 사용예정액, 양도예정금액, 수증예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